

## 일방적인 e메일 보내는 행위

### -표현의 자유인가 재산에 대한 무단침입죄인가

#### o 주요 내용

- 특정 회사나 개인에 일방적으로 e메일을 보낸다면 이것이 그 회사 재산에 대한 무단침입죄(trespass to chattel)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해 처벌할 수 없는가. 이에 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음.

-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1998년 사내 게시판과 인텔 직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보낸 전 직원 켄 하미디를 회사 재산에 대한 무단 침입 혐의로 고소한 것임.

- 1995년 해고된 켄 하미디씨는 인텔 직원들과 인텔 사이트에 자신이 연령 차별로 억울하게 해고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왔으며, 그는 또 카우보이모자를 쓰고 말을 탄 채 인텔을 비판하는 전단을 캘리포니아주 풀섬의 인텔 사옥 앞에서 뿌리기도 하였음.

- 인텔이 토지나 건물에 대한 무단침입으로 켄 하미디 씨를 고소할 수 없었던 것은, 하미디 씨가 인텔 건물 부지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임.

- 인텔측은 "사내 이메일 서버 및 인터넷 게시판도 엄연한 회사의 자산이자 작업 공간"이라며 "켄 하미디의 일방적인 이메일 세례로 업무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 상공회의소 등 재계도 인텔을 지지하고 있음. 이는 기업들이 그동안 소비자, 네티즌 등의 항의나 비방성 이메일에 골머리를 앓아왔기 때문임

- 한편 켄 하미디를 포함한 변호인측과 시민단체 등은 e메일을 띄우고 전단을 뿌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인텔의 고소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음. e메일은 누구에게나 부담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과도 같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음. 미국 ‘전자 국경 재단’의 신디 콘 회장은 “모든 이메일을 보내기 전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인텔의 논리로 는 기업의 웹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와 링크시키는 등 사이버상의 모든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인텔은 1998년에 하미디 씨를 고소한 이래 3번의 법정투쟁에서 이겼으나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이달 안에 하미디 씨의 e-메일이 ‘재산에 대한 무단침입’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임

#### o 분석

- 인터넷상의 e-메일을 이용하여 의사전달이 보편화된 시점에 생긴 이 논쟁은 판결 결과에 따라 앞으로 e-메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음.

- 또한 판결 결과에 따라 항의성 이메일이나 광고성 스팸메일 등에 대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핸드폰 및 이메일 등을 통한 스팸메세지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시발탄이 될 수 있음.